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7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금천구민들이 스토킹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안 제4조)
-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안 제6조)
- 스토킹범죄 예방과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의 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상위 법령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책무 또는 관련 사무가 위임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지원할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적 책무이므로 타당하다 봄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안 제4조)
-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스토킹범죄의 대응 및 예방을 추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적절하다 봄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안 제6조)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봄
- 스토킹범죄 예방과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안 제8조)

다. 검토의견

-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로써,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위와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일 : 2021. 10. 21.)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전국 20여 곳(서울 4개구)」
- 금천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관내 스토킹 관련한 112신고가 2021년 93건, 2022년 200건으로 215%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천구 스토킹범죄 112신고 및 사건 처리 현황(' 20 ~ 22년)

구 분	'21년	'22년(1-9.30)
신고(건)	93	200
사건 처리(건)	19	74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2항제2호1)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도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이며, 범죄예방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사항이라 할 것임.

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

○ 본 안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톱킹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하여, 스톱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이하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